

김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3226호
----------	--------

제출년월일 2023. 4. 10.
제출자 장윤순 오강현의원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4월 10일 장윤순 의원, 오강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김포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행사에 적용됨에 따라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안 제6조)
- 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옥외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상 규정되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밀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까지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